

공 고 문

개인택시 특별부제[수조]운영 규정 운행자 자격확대 일부 개정 및 신규 대상자 선정 안내

□ 특별부제[수조] 주요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	개정사유
제2조(자격) 인천운전기사 선교회, 인천 운전기사 사도회에 가입한 회원.	제2조(자격) 인천운전기사 선교회, 인천 운전기사 사도회, 인천운전기 사 불교회, 인천운전기사 봉 사회에 가입한 회원.	대한민국 종교분포에 따른 3대 종교구성 및 비종교인의 봉사활동 확대 의견수렴.

□ 특별부제[수조] 신규가입 신청

1. 신청기간 : 2018.06.01 ~ 2018.06.20.
2. 장 소 : 개인택시조합 사무실 업무과
3. 신청서류 : 아래 참조

- 아 래 -

목 적	종교생활과 자원봉사활동, 택시운송사업의 병행을 위함
자 격	① 인천운전기사 선교회, 사도회, 불교회, 봉사회에 가입한 조합원. ② 사회복지활동 인증관리규정 제6조에 등록된 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서를 발부받은 자로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연48시간 이상인 조합원. ※ “수조”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2회(6월,12월)
필요서류	① 인천운전기사 선교회, 사도회, 불교회, 봉사회 회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사회복지활동 인증관리규정 제6조에 등록된 기관으로부터 발부한 연 48시간 이상의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 내역서.
부제(휴무일)	매주 수요일, 일요일 및 첫째 셋째주 금요일.

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



인 천 광 역 시

수신자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
(경유)

제목 개인택시 특별부제[수조]운영 규정 일부개정 알림

1. 인천광역시 택시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조합에 감사드립니다.
2. 개인택시 특별부제[수조] 운영과 관련하여 운행자 자격에 대한 운영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인천광역시 “개인택시특별부제 [수조] 운영규정”에 대하여, 검토 후 불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18. 5. 15.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3. 이에 따라, “개인택시특별부제 [수조] 운영규정 개정(안)”에 대한 조합원 안내와 홍보를 통하여 2018년 6월 신규 대상자 선정 시부터 적용하여 택시 부제 운영·관리 및 택시운송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특별부제 [수조] 주요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(안)	개정사유
「특별부제 [수조] 운영규정」 제2조(자격) 2. 인천운전기사 선교회, 인천운전기사 사도회에 가입한 회원	2. <u>인천운전기사 선교회, 인천운전기사 사도회, 인천운전기사 불교회, 인천운전기사 봉사회에 가입한 회원</u>	- 대한민국 종교분포에 따른 3대 종교 구성 및 비종교인 봉사활동 확대 의견 수렴
제4조(대상자의 선정) ① “수조”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2회(6월, 12월) 제2조의 자격을 구비 한자로 제3조의 필요한 서류를 조합에 신청한다. ② “수조” 대상자의 선정은 신청자가 조합에 신청한 서류를 조합이사회에서 적격 심의 후 인천광역시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선정한다.	③ <u>조합에서는 특별부제(하조, 수조) 배정인원을 인천 개인택시 전체 면허대수의 5/100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.</u>	- 개인택시 전체 면허대수의 5%이상 특별부제조로 편중되지 않도록 배정인원 조정

인 천 광 역



주무관

김여진

택시관리담당

이재휴

택시화물과장

최민수

2018. 5. 16.

협조자

시행 택시화물과-6985

(2018. 5. 16.)

접수

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, 민원동 3층(구월동)

/ <http://www.incheon.go.kr>

전화 032-440-3824

전송 032-440-8669

/ rhezina@korea.kr

/ **대국민 공개**

"출산하기 좋은 도시, 내 아이의 희망 인천"